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2019. 8

목 차

I.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1
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4
3.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6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8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 11
6.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증여(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13
7. 연구개발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14

II.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연부연납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16

III.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18
2. 가업상속공제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 20

IV.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시 중견기업 구간 신설 21

V.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23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25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27
4.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29

VI.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31

I.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견기업 세제지원 대상 확대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동법 시행령 제22조의9

현 행

- (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기업 30~40%, 중견 25~40%, 그 외 기업 20~30%를 법인세에서 공제('21.12.31까지)
- (시설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기업 10%,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7%, 그 외 기업 5%를 법인세에서 공제('21.12.31까지)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시설로 바이오, 로봇,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등
 - ** 적용요건 : ①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비중이 매출액의 2% 이상일 것, ②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또는 신성장동력 관련 최초 등록 특허권 보유, ③ 상시근로자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중소기업 제외)

문제점

-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 핵심소재 및 부품의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이 절실한 상황
- 제조 중견기업은 40.4%*가 1차 협력사로 대기업과 수위탁 거래를 통해 부품 및 소재를 납품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지원할 경우 핵심소재의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중견기업은 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원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50.7%)”**을 응답

* 신산업 중견기업 수출 비중('15) : 바이오·헬스 52.8%, 항공·드론 42.8%, 시스템 반도체 38.1%(산업부, 중견기업 비전 2280, 2018.2)

** 중견련 내부자료, 중견기업 4차 산업혁명 조사, 2017.10

- 또한, 중견기업의 28.2%*는 관심 투자분야로 신사업 진출을 응답했으며 기업의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은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할 때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중견기업 관심 투자분야 신사업 진출 응답 비중 : 전체 중견기업 28.2%, 1조원 이상 48.8%,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43.1%, 3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34.4%(중견련,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그러나 신성장동력 관련 세제지원의 경우, 공제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제도의 활용도가 미미한 수준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을 미래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등 일부 기술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견기업 지원 대상도 코스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견기업의 제도 활용이 어려움***

* 조특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338개사(7.6%)(중견련, 2017년 말 기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 중견기업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 비중 : ('15)4.33% → ('17)1.86%
(기획재정부,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2018.9)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집약도, 상시근로자 수 등의 지원조건으로 인해 제도 이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

- 조특법은 중견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인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세제의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매출 5천억원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를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 세액공제까지 확대할 경우 타 지원과 시너지를 이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도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18)

□ 건의사항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5천억원 미만 코스닥상장중견기업 ⇒
(건의)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현행)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건의)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2.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중견기업 공제율 상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현 행

- 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증가분방식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당기분방식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

□ 문제점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8.6%, 기술격차는 4.2년으로 2014년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 추격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시급

구분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2014년	2016년	증감	2014년	2016년	증감
한국	78.4	78.6	0.2	4.4	4.2	-0.2
중국	69.7	71.1	1.4	5.8	5.2	-0.6
일본	93.1	92.7	-0.4	1.6	1.5	-0.1
EU	95.5	94.4	-1.1	1.1	1.1	0.0
미국	100.0	100.0	0.0	0.0	0.0	0.0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년 기술수준평가

- 중견기업의 연구집약도는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혁신 역량 강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연구개발 투자 유인책이 필요

* 중견기업 연구집약도 : ('15)1.05% → ('16)0.97% → ('17)0.81%(중견련, 2017년 말 기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고, 각종 정책자금 및 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됨에 따라 비용 부담이 증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 (중소기업)25% → (중견기업)8~15% → (대기업)0~2%
 (중견기업 진입연차별 세액공제율 : (1~3년차)15%→(4~5년차)10%→(6년차 이상)8%)

- 이에 중견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문턱을 낮추고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각 구간별 5%)시 경제적 효과>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산유발액(억원)	75,278	78,382	81,613	84,978	88,481
취업유발인원(명)	25,451	26,500	27,593	28,730	29,914
고용유발인원(명)	18,293	19,047	19,832	20,650	21,501

* 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19.2

□ 건의사항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당기분방식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현행) 중견기업 1~3년차 15%, 4~5년차 10%, 6년차 이상 8% ⇒
 (건의) 중견기업 1~3년차 20%, 4~5년차 15%, 6년차 이상 13%

3.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황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현 행

-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7%,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21.12.31까지)

□ 문제점

-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4차 산업 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혁신성장 주체인 중소기업과 지역 R&D 체질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
- 그러나 중견기업은 미·중 무역분쟁, 환율변동, 신흥국의 추격 및 국내 제조업 불황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최근 3년간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모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신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 중견기업 설비투자 여부 : ('15)74.9% → ('16)63.6% → ('17)61.9% → ('18 계획)58.7%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 중견기업 연구집약도 : ('15)1.05% → ('16)0.97% → ('17)0.81%(중견련, 2017년 말 기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분석)
- 또한, 2016년부터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이 축소(5%→3%)되어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이 부족

-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간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수혜 대상의 범위가 폭넓고 행정 비용이 소모가 적어 OECD 회원국 중 27개국 ('95)12개국→('04)18개국→('13)27개국)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정 상황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응방안, 2014

- 중견기업은 연구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 투자의 지속성 및 성과 창출 효과가 크며*,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달리 先투자 後지원 형태의 세제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투자 유인이 가능

*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견기업의 경우, 지원에 의해 자체 R&D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년 이상 지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견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연구, 2018)

□ 건의사항

-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공 제 율) (현행) 3% ⇒ (건의) 5%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6

□ 현행 및 개정안

- (현행)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 기술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7%,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19.12.31까지)
- (개정안) 일몰연장('21.12.31까지) 및 1년간 한시적 공제율 상향 (중소10%, 중견 5%, 그 외 기업 2%('20.1.1~'20.12.31))

□ 문제점

-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70.0%, 미국의 52.1%, 일본의 79.3%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17년 노동생산성은 32.9달러(PPP적용, 노동시간 기준)로 OECD 35개국 중 27위를 기록하여, 2000년 이후 매년 하위권을 차지
 - * 한국생산성본부, 2018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 '19년 전체 기업의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6.3% 줄어든 170조원으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설비투자가 축소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대폭 감소할 전망(중소 △24.6%, 중견 △31.3%)

<2019년 설비투자 계획>

(단위 : 조원, %)

구 분	금액			증감율	
	2017	2018	2019	2018	2019
전 체	189.8	181.5	170.0	△4.4	△6.3
대 기업	150.5	145.0	143.7	△3.7	△0.9
중견기업	18.0	18.2	12.5	1.1	△31.3
중소기업	21.3	18.3	13.8	△14.1	△24.6

*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2018.12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중견기업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세제지원으로 특히 제조 중견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이나 '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율이 축소(5%→3%)

* 제조 중견기업의 32.4%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36.7%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축소된 것에 우려를 표함(중견련, 2018 중견기업 세제 실태조사)

- 또한 본 제도는 중견기업의 투자를 증대시키고 당기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

* 기획재정부, 2017년 조세특례심층평가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7.9

- 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고, 나아가 제조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이 필요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공제율을 상향(3%→5%)할 경우, 생산 및 고용·취업을 유발하여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인상(3%→5%)시 경제적 효과>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생산유발액(억원)	25,818	26,664	27,538	28,441	29,373
취업유발인원(명)	8,729	9,015	9,310	9,615	9,931
고용유발인원(명)	6,274	6,479	6,692	6,911	7,138

* 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19.2

-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2019년 세법개정안에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으나, 대규모 시설투자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수적인 만큼 3년 이상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건의사항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현행) 3% ⇒ (개정안) 3%(‘20.12.31까지 1년간 5%) ⇒ (건의) 5%

5.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동법 시행령 제22조의8

□ 현행 및 개정안

- (현행) 기업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중소 6%,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감면('19.12.31까지)
- (개정안) 일몰예정('19.12.31까지)

□ 문제점

- 기획재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4대 신산업으로 선정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세제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
 - '15년 바이오산업 수출금액은 4조 2,861억원으로 '11년에 비해 수출금액의 55.9%가 증가하며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
 - 바이오산업 종사 기업의 투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바이오산업 평균 시설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12.3%가 증가했으며, 특히, 중견기업으로 볼 수 있는 종사자 300명~1,000명 규모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이 전년 대비 138.6%('16)12.2억원→('17)29.1억원) 증가
- * 바이오산업 수출금액 : 2조7,494억원('11) → 3조475억원('12) → 3조1,642억원('13) → 3조4,052억원('14) → 4조2,861억원('15)(국내바이오산업실태조사)
- 바이오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경우 정책 실효성이 높고 대기업 쏠림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비중의 53%*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일반 제약사 34개 기업 중 27개사가 중견기업으로 산업을 주도

*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비중 : 대기업 13%, 중견기업 53%, 중소기업 34%(산업부, 중견기업 비전 2280, 2018.2)

- 바이오산업 성장 촉진이라는 그간의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특히 바이오산업에 두각을 보이는 중견기업의 제품 품질을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필요

□ 건의사항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일몰연장) (현행) '19.12.31까지 ⇒ (건의) '22.12.31까지
 - (공제율) (현행) 3% ⇒ (건의) 5%

6. 가업승계에 대한 사전증여(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현 행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2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 문제점

-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은 원활한 사업승계를 위하여 생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희망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상속개시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정산되는 과세 유예제도로 과세특례 한도가 낮아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이 어려운 상황
- 생전의 계획적인 가업승계 지원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상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한도(500억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 건의사항

- 과세특례 한도 확대 : (현행) 100억원 ⇒ (건의) 가업상속공제한도와 동일

7. 연구개발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현 행

- 조세특례제한법은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등의 측면에서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단,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항목에서 제외)

*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7%, 중견기업 8~9%, 그 외 기업 10~17%

□ 문제점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연구개발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연구개발투자 금액의 일부가 감면에서 제외되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도 이월공제만 쌓이는 상황

- 최근, 중견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익은 더욱 줄어들 전망

* 개별법인 중견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17년)80% → (현행)60%

연결법인 중견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18년)80% → (현행)60%

- 지난 3년간 중견기업의 연구집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중견기업 연구집약도 : ('15)1.05% → ('16)0.97% → ('17)0.81%(2017년 말 중견기업 통계)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세율이 높고 대기업에 비해 세제지원 활용이 저조하여 타 기업군에 비해 높은 실효세율을 보임

* 기업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 대기업 17.1%, 중견기업 17.5%, 중소기업 12.8% (2017년 국세통계연보)

- 이에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견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19.2

□ 건의사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행) 중소기업⇒(건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포함

II.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연부연납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현 행

- 상속세 연부연납시 금전, 납세보증보험,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증권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 (단, 비상장 주식 제외)

□ 문제점

- 중견기업 중 상장기업은 약 18%에 불과하며, 약 82%의 비상장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비상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소계
기업수	3,646개	455개	365개	2개	4,468개
비중	81.60%	10.18%	8.17%	0.04%	100.00%

* 2017년 말 중견기업 통계, 중견련

- 비상장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은 납세 담보 제공이 불가
- 다른 과세대상 소득(양도소득 등)이 있어 그에 대한 조세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환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납세담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부 수궁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와 같이 비상장주식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당해세)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국가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동일
 - 이러한 경우 국가가 환금성이 낮다는 이유로 납세담보로 제공받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
- 이는 사실상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헐값에 조기 매각하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결과로, 비상장주식이 과세대상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조세상 일관성 결여
- 따라서 비상장주식 자체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대상인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 가업상속공제 및 일반상속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Ⅲ.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 현 행

-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월 20만원 한도)

□ 문제점

- 중견기업은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점유하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어 R&D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 필요

* 중견기업 수출비중('15) : 바이오헬스(52.8%), 항공·드론(42.8%), 시스템반도체(38.1%)
(산업부, 중견기업 비전 2280, 2018.2)

- 그러나,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보유비율이 '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중견기업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보유 비중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있음	44.7%	43.4%	40.8%	40.4%
기업부설연구소	29.6%	28.9%	26.0%	24.1%
연구전담조직	10.2%	9.6%	10.1%	11.0%
연구개발인력	4.9%	4.9%	4.9%	5.3%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없음	55.3%	56.6%	59.2%	59.6%

* 중견련, 중견기업 실태조사

- 또한, 타 기업 스카우트,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해 중견기업 재직자의 이직률이 20.6%(기업당 평균 59.6명)에 달해 중견기업의 우수인력 채용·유지 유인 필요

* 중견기업 주요 이직원인 : 타 기업 스카우트(20.4%), 낮은 임금수준(19.6%), 자사 인원감축(5.7%), 복지수준 불만(5.4%) 등(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소득증대를 통한 우수인력의 중견기업 취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견기업의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

-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만으로는 국내 부품소재 중견기업의 역량제고가 어려워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치를 위한 전향적 지원이 절실

* 관계부처 합동,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2019.8

□ 건의사항

-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 확대
 - (현행)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전담요원 ⇒
(건의)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연구전담요원까지 확대

2. 가업상속공제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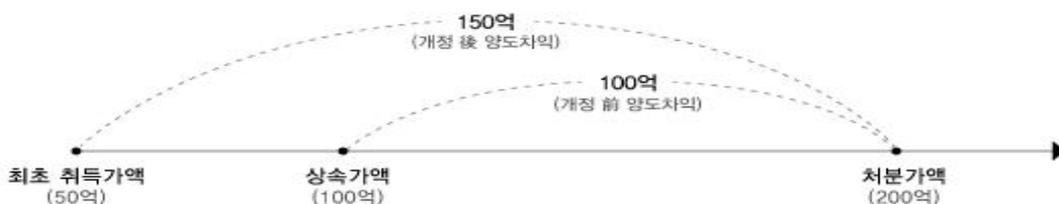
□ 현 행

-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취득가액을 적용

* {①피상속인의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적용률} + {②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가업상속공제적용률)}

□ 문제점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는 경우 상속시점에 이연받은 상속세에 대해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아닌 과세이연 효과에 불과
 - 창업주가 50억원의 자본으로 가업을 발전시켜 100억원을 가업상속하고, 상속인이 사업을 15년간 영위한 후 200억원에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은 100억원(처분가액 200억원-상속취득가액 100억원)이 아닌 150억원(처분가액 200억원-최초취득가액 50억원)으로 산정됨



□ 건의사항

- 가업상속공제 자산양도시 취득시점을 상속받은 시점으로 판단

IV.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시 중견기업 구간 신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및 제76조의13,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20조의14, 제120조의17

□ 현행 및 개정안

-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각 사업 연도 소득의 60%로 제한(단, 중소기업 및 희생계획 중인 기업 공제한도 적용 제외)

* 이월결손금: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하며, 이러한 결손금이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금액

- (개정안) 사업재편기업을 공제한도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

□ 문제점

- 중견기업 7곳 중 1곳은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적자기업의 약 90%를 차지하여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의 업황이 보다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중견기업 적자기업 현황>

구분	영업이익 적자기업	전체 중견기업
	수(비중)	수(비중)
매출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584개(90.7%)	3880개(86.8%)
매출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60개(9.3%)	588개(13.2%)
합계	644개(100.0%)	4468개(100.0%)

* 2017년 말 기준 중견기업 대상으로 분석, 중견련

- 이월결손금 제도는 적자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조속한 경영위기 탈피를 목적으로 하나 '16년 제도 신설 이후 매년 공제한도를 축소*하여 제도 실익 감소

* ('17년)80% → ('18년)70% → ('19년 이후)60%

- 특히 중견기업은 세액공제 지원 축소, 세부담 관리 여력 부족 등으로 실효세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마저 대기업과 동일하여 타 기업군에 비해 수혜 비중이 낮아 역차별 발생

* 기업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 대기업 17.1%, 중견기업 17.5%, 중소기업 12.8% (2017년 국세통계연보)

<이월결손금 조정 현황>

구 분	이월결손금 조정법인		이월결손금 조정금액	
	수	비중	금액	비중
중소기업	77,878개	77.4%	71,822억원	20.8%
중견기업	447개	0.4%	10,915억원	3.2%
그 외 기업(상출집단 포함)	22,303개	22.2%	262,526억원	76.0%
합계	100,628개	100.0%	345,263억원	100.0%

* 2017년 국세통계연보

- 정부는 사업재편기업을 공제한도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사업재편기업은 매년 평균 30여개*에 불과하며 특히 중견기업의 제도 실익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견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 및 기업 규모별 세제지원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제도 개선 필요

* 기업활력법 지원센터, 사업재편계획 승인공고, 2019.7

□ 건의사항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시 중견기업 구간 신설

- (현행)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이행기업 100%, 그 외 기업 80% ⇒
 (개정안)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이행기업, 사업재편기업 100%, 그 외 기업 60% ⇒
 (건의) 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이행기업, 사업재편기업 100%, 중견기업 80%, 그 외 기업 60%

V.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 현 행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3개년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상속 시 최대 5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 업력 10년 이상 : 200억원 / 20년 이상 : 300억원 / 30년 이상 : 500억원

□ 문제점

- 해외 주요국*은 가업상속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직계비속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낮은 세율의 세금을 납부

* 직계비속 승계시 우대세율 적용 국가 : 프랑스 60%→45% / 독일 50%→30% / 핀란드 33%→19% / 네덜란드 40%→20% 등

<주요국의 직계비속 가업승계 시 공제혜택(2017)>

국가명	직계비속 명목 최고세율	직계비속 가업승계 시 공제혜택	실제 부담 최고 세율
스페인	34%	가족소유 기업인 경우 주식가치의 95% 공제 (17개 지방정부 중 6개는 상속세 면제)	1.7%
벨기에	30%	일정 지분, 자본금 유지 등 기업승계요건 충족 시 낮은 세율 적용	3.0%
아일랜드	33%	주식가치의 90% 공제	3.3%
네덜란드	20%	상속 후 5년 이상 경영 등 법적요건 충족 시 83%(107만 유로 초과)~100%(107만 유로 이하) 공제	3.4%
독일	30%	지분 및 임금지급 유지 시 85~100% 공제	4.5%
프랑스	45%	환매 금지 조건부 지분 75%까지 공제	11.25%
영국	40%	상장주식 50%, 비상장주식 100% 공제	20.0%

* EY한영, Worldwide estate and inheritance tax guide, 2018

-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국내 시장에서 성장 한계에 봉착, 해외 신시장 개척 등 글로벌화를 통한 지속성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성장전략 필요
- 과도한 상속세 문제로 인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해외 PEF, 대기업에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이 가업승계를 포기할 경우 인수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해외 PEF, 대기업에 매각되어 중견기업이 축적해 온 기술, 경영 노하우 등 사회적 자산의 해외 유출 및 대기업으로의 부의 집중화 현상이 우려됨
- 2014년부터 가업상속공제에 이월과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이연과세하는 제도로 변경되어 공제한도 제한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공제한도 확대 필요

□ 건의사항

- (공제대상 확대) (현행) 매출 3천억원 미만 ⇒ (건의) 전체 중견기업
- (공제한도 확대) (현행) 최대 500억원 ⇒ (건의) 1,000억원

* 중견기업 평균 상속세 1,185억 추정(중견련, 2013)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현행 및 개정안

-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10년간 사후관리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유지기간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70~100%를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 사후관리요건 : ① 가업용 자산의 80%를 보유할 것, ② 주된 업종을 유지할 것,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④ 정규직 근로자수 기준 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거나 상속 이후 10년간 평균 근로자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20%에 미달하지 않을 것

- (개정안) 사후관리기간 단축(10년→7년), 중견기업 고용유지 완화(120%→100%), 업종유지 완화(소분류→중분류), 자산처분 확대

□ 문제점

-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나,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으로 기업이 공제제도를 기피하는 상황 발생

< 가업상속공제 적용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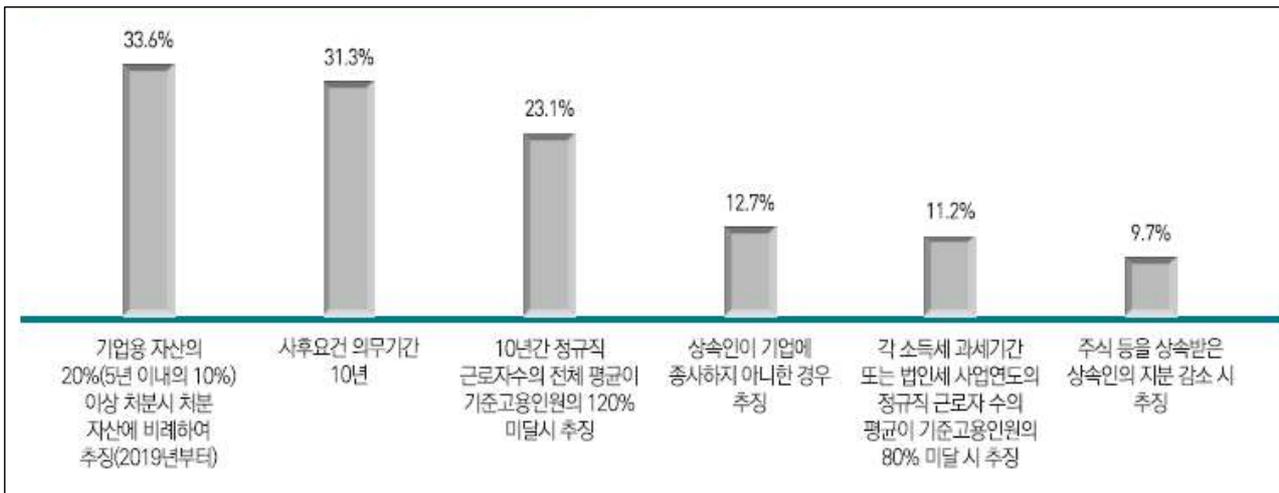
(단위:개,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공제건수(A)	51	43	54	46	58	70	68	67	76	91	62
공제금액(B)	40	98	386	325	343	933	986	1,706	3,184	2,226	1,023
건당금액(B/A)	0.8	2.3	7.2	7.1	5.9	13.3	14.5	25.5	41.9	24.5	16.5

* 국세통계연보 및 전규안, '가업승계세제 개편방안', 2018

- 특히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 후 매출 및 이익감소 등 경영악화로 고용유지 요건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 오히려 유예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 현행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일본(5년)이나 독일(5년 또는 7년)보다 길어 가업승계 후 가업의 신속적인 운영에 지장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부담>



* 중견련, 2018년 중견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건의사항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 (사후관리기간의 단축)(현행) 10년 ⇒ (개정안) 7년 ⇒ (건의) 5년*

* 독일 : 상속세의 85% 공제시 사후관리기간 5년, 100% 공제시 7년

일본 : 사후관리기간 5년

- (고용유지 요건 개선)(현행) 중견기업 근로자 수 120% ⇒

(개정안) 중견기업 근로자 수 100% ⇒ (건의) 독일식 총급여액 유지

* 독일 : 85%공제 시 5년간 총급여 400% 유지, 100% 공제시 7년간 총급여 700% 유지)

3.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 현 행

- 기업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한 법인과 정상 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정상거래비율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외 기업 30%

□ 문제점

- 대기업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정상적인 거래마저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과세방식이 강화*되어 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

* 2017년 세법 개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내용

- ① 중견기업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 개정(정상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의 50%, 한계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의 50%),
- ② 중견기업 범위 축소(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견기업 제외)

- 제조 중견기업의 40.4%*는 1차 협력사로 급작스러운 원청업체의 발주량 증가 시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인해 납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주 하청 거래만으로는 물량 확보가 어려움

* 2018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중견련

- 비용지원 및 지분참여 등을 통해 2차 협력업체의 역량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왔으나, 하청업체의 방만경영 및 내부관리가 어려워 안정적인 물량확보 및 제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

- 중견기업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신사업 진출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로 인해 유연한 기업경영 및 신성장동력 확보가 여의치 않음
- 또한, 특허 등 독점적 기술력을 보유하여 외부거래 대체시 핵심기술 유출 및 자사 경쟁력 저하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의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
 -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 추진되었으나 최종 통과법안에서 삭제되어 기업현장의 아쉬움이 가중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신산업 진출 등 중견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과세하여 규제로 작용하므로, 제도 개선을 통한 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환경 조성 필요

□ 건의사항

-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식 개편 검토
- 기술적 특성상 불가피한 거래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4.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개선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49조의2

□ 현행 및 개정안

- (현 행)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간주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

< 기업규모별 할증평가율 >

구 분	중소기업*	이 외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 중소기업이 '20.12.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 제외

- (개정안)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지분율에 따른 차등 미적용)

< 기업규모별 할증평가율 >

구 분	중소기업*	이 외
할증평가율	0%	20%

□ 문제점

-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 할증률 20%를 감안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
- 부모로부터 받은 사업용 자산 및 주식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계는 불가능에 가까움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음

- 현행 할증평가는 회사의 자산, 업종,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액을 산정하여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어 원활한 기업승계에 걸림돌로 작용
- 대다수 기업은 현금성 자산 부족*으로 인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세금 납부를 할 수밖에 없음
 - * 중소기업의 48.6%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자산이 부족하다고 응답(상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 의원 검토보고서, 2015.10)
- 상장기업의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된 상증법상 평가액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 승계 후 최대주주 지분을 하락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우려

□ 건의사항

- 구체적인 타당성이 결여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또는 중견기업 구간 신설
 - (현행) 중소기업 10~15%, 그 외 기업 20~30% ⇒
 - (개정안) 중소기업 0%, 그 외 기업 20% ⇒
 - (건의) 중소기업 0%, 중견기업 10%, 그 외 기업 20%

VI.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 감면을 상향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5조,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 현 행

- 중소 제조업체 및 중견(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제조업체가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의 중소 50%, 중견 3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19.12.31까지)

□ 문제점

- 최근 국내 제조기업은 노동·환경 규제 강화 및 환율변동·보호 무역주의 등 글로벌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대내외 경영위기에 노출되어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산업별 R&D 연계 등 중견 제조업 혁신성장 방안*을 추진 중으로 제조 중견기업의 38.3%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공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 * 산업부, 중견기업 비전 2280, 2018.2
- ** 중견련 내부자료
- 이처럼 제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19.12.31)이 도래함에 따라 공장자동화 설비에 대한 투자비용 증가 및 제품 품질저하 우려

- 관세감면 신청기업의 대다수가 로봇, 제약 등 신산업을 영위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 제품 수입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기존 사용 제품과의 규격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품질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高사양·高규격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기업 제품으로 대체할 경우 불량률 상승 등 품질 유지에 애로 예상
- 또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의 74.2%(23개)가 일본 수입품이라 FTA가 적용되지 않아 본 제도에 대한 기업 활용도가 높은 상황으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거져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 제도가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2018년도 중견기업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총 31개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수혜기업은 2019년에도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
- 2017년 중견기업의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실적은 총 11.2억원으로 타 지원정책에 비해 세수부담이 적고, 감면금액에 비해 기업 만족도가 높아 일몰연장시 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이 예상됨
- 실제 관세감면 물품을 신청한 6개 기업의 3년간 고용현황을 보면 대다수 기업의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공장자동화물품 도입을 통한 생산성향상은 신규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 활용 기업 고용변동>

구분	2015년 근로자 수	2018년 근로자 수	증감율	구분	2015년 근로자 수	2018년 근로자 수	증감율
기업①	412명	445명	8.0%	기업④	587명	621명	5.8%
기업②	427명	403명	-5.6%	기업⑤	1528명	2030명	32.9%
기업③	530명	611명	15.3%	기업⑥	709명	845명	19.2%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 활용 기업 사례>

사례	A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는 구름베어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7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물품으로 5개 물품을 신청·지정되어 '18년 1억 1,100만원을 감면받음 - 공장 자동화 시스템 제조업을 영위중인 A사는 '17년 현격한 매출신장을 보이며 성장,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중 * <u>평택공장 신축 투자 : 208억원('17년), 시스템 생산공장 증설 : 987억원('18년~'20년)</u> 			
	구분	2015	2016	2017
	매출액	2,303억원	2,511억원	3,711억원
	영업이익	246억원	217억원	349억원
	종사자수	530명	556명	59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이 국내 시장을 선도함에 따라 제품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설비 및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이 미흡,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임 - 설비라인 규격화 및 수입시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대다수의 설비를 일본 수입품으로 진행하여 제품생산 원가 절감 - 제작공정에 필요한 5개 제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요청하여 '18년 10.5억원의 관세감면을 예상, 적극적인 설비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사례 2	B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사는 금속 캔 및 강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7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물품으로 4개 물품을 신청·지정되어, '18년 수입한 2개 물품에 대하여 <u>1억 2,500만원을 감면받았으며 8월 중에도 기계를 추가 수입할 예정임</u> - <u>부탄가스, 스프레이 제품 용기를 제조를 위해 one-stop combination 공정을 구축하여, 전체 공정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업체가 없는 상황임</u> - FTA를 통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독일, 스위스, 중국이나 관세가 부과되는 일본, 대만 등 <u>전적으로 해외설비에 의존</u> - '18년 관세감면을 적용받은 2개 설비는 일본 제품임 ○ 강관 업계는 전통적으로 <u>일본 기계가 유명하나 엔화 강세 및 관세 부담으로 인해 일본 기계설비 도입이 어려워 제품 정밀도 향상에 애로가 있었음</u> - 관세법 개정('14.10.31)을 통해 공장자동화물품 <u>관세감면이 중견기업에도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여, 처음으로 일본 설비를 공정에 도입하였으며, 한·중 FTA 체결 전인 '16~'17년에 중국 설비를 수입할 때에도 관세감면을 적용받아 적극적인 설비투자 촉진에 기여</u> 		

사례 3 C사

- C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7년 관세감면 공장자동화물품으로 11개 물품을 신청, 8개 물품이 지정되어 '18년 2,400만원을 감면받음, 사드여파 및 자동차업계 불황으로 인해 투자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연내에 5대의 설비를 추가할 계획임
 - 감면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B사의 경우 자금계획 수립 시 관세감면 제도가 설비투자 비중 확대에 크게 기여
- 자동차 부품은 생명과 연계되어 있어 정밀도 확보가 필수적인 업종으로 관세감면을 통해 일본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제품의 완성도 제고
 - 일본 설비는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져있어 안전성 관련 실험 및 데이터가 풍부한 반면 국내설비는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제조 설비 도입시 위험요소 존재, 유럽 등 FTA 체결국 제품도 수입하고 있으나 일본 기술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

□ 건의사항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연장 및 중견기업 감면율 상향
 - (일몰연장) (현행) '19.12.31까지 ⇒ (건의) '22.12.31까지
 - (감 면 율) (현행) 30% ⇒ (건의) 50%